

「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공고

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「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3일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모집 및 신청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5. 4. 23.(수) ~ 5. 31(토)

나. 신청대상

- (고용보험)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*
- (산재보험)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

* 1인 자영업자 :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

<지원 제외대상>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

다.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

- 홈페이지 : www.jbsos.or.kr(사업신청계시판-글쓰기)
 - 우편·방문 : [54898]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3층(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)
- ※ 최초 1회 신청으로 당해 연도('25년 1월~12월) 보험료 지원
※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 필수

라. 신청문의 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Tel. 063-717-1305)

2 지원내용

가. 지원기간 : 2025. 1. ~ 12.

나. 지원규모 : 약 1,500건 정도 ※ 보험요율별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다. 지원내용 :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(고용, 산재) 일부 지원

※ '25년도 기납부 보험료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

- (고용보험) 월 보험료의 2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(단위 : 원)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지원 비율	20%						
지원액	8,190	9,360	10,530	11,700	12,870	14,040	15,210

1) 보험요율 : '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.25% 적용

2)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97호)로, 가입자가 1~7등급 중 선택

3) 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- (산재보험) 월 보험료의 5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(단위 : 원)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기준보수액	2,440,633	2,932,530	3,424,430	3,916,320	4,408,220	4,900,120
월 보험료	35,877	43,108	50,339	57,570	64,801	72,032
지원 비율	50%					
지원액	17,939	21,554	25,170	28,785	32,401	36,016

기준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	10등급	11등급	12등급
기준보수액	5,392,020	5,883,920	6,375,820	6,867,710	7,359,610	7,851,515
월 보험료	79,263	86,494	93,725	100,955	108,186	115,417
지원 비율	50%					
지원액	39,632	43,247	46,863	50,478	54,093	57,70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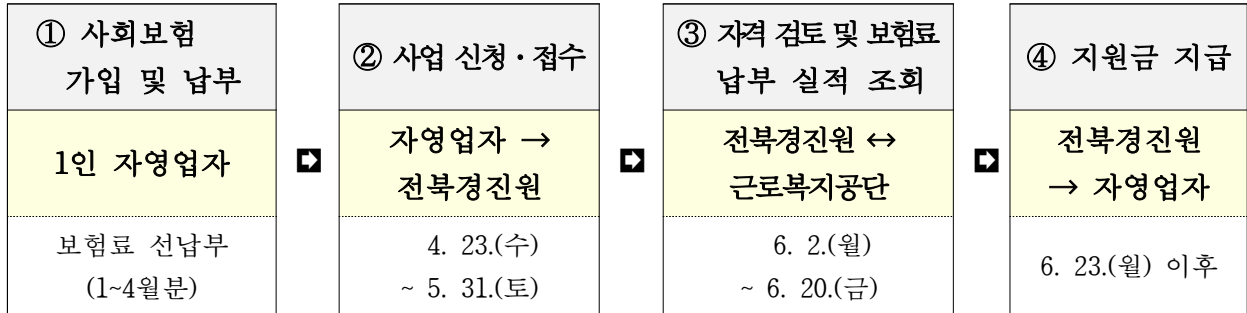
1) 보험요율 : '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.47% 적용(업종별 요율 상이)

2)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67호)로, 가입자가 1~12등급 중 선택

3) 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3 지원절차

가. 지원절차 : 1인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→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

※ 해당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지급시기 :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

※ **금번 신청 대상 보험료(1~4월 분)에 대해서는 6월 23일(월) 이후 지급**

※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

4 신청서류(필수)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 1부	서식 1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	서식 2
3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	서식 3
4	중소기업확인서 1부(중소벤처24 홈페이지 발급) * 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	서식 4
5	통장사본(대표자 본인명의) 1부 * 거래 가능 통장	서식 5
6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	서식 6

5 유의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**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**

- 나.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다.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업체에 귀속됨

6 유의사항

연번	구분	기관명	연락처
1	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	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	063-717-1305
2	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	근로복지공단	1588-0075
3	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1357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흡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